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6
----------	-----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박성원·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김경희
김상찬·김상현·김순식·김우겸·김인길·김장하
김중대·김태웅·문순규·박남용·박선애·박춘덕
박현재·백승규·백태현·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천수·이해련·이현순·전병호·전홍표·장길상
조영명·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은하
의원(35명)

1. 제안이유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1도, 그 외 지역은 18도로 용도지역별 세분 규정한 것을 21도로 통일하여 개발가능부지를 확보하고 개인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여 도시발전의 탄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경사도 요건을 변경함(안 제22조)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반영함(안 제65조제4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6조~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4조~15조, 안 제18조~제19조, 안 제20조의2, 안 제22조~제27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및 제32조, 안 제35조, 안 제42조, 안 제44조, 안 제46조, 안 제48조, 안 제54조, 안 제57조, 안 제59조, 안 제61조, 안 제65조, 안 제67조~제74조, 안 제83조~제8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청취하여야”를 “청취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였거나 미비 된”을 “않았거나 미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안하여야”를 “입안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호·관리하여야”를 “보호·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관리·운영 하기”를 “관리·운영하기”로 한다.

제12조 중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에”를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에”로, “「창원시 공동구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조례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아니

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작물의”를 “공작물을”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개최하여야”를 “개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를 “21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이상”을 “21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위해 등이 발생 할”을 “위해(危害) 등이 발생할”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도록 용벽·석축·폐붙임”을 “않도록 용벽·석축·폐붙임”으로, “하여야하고”를 “해야 하고”로,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를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5조를 준용한

다”를 “제25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같은 호 및 제6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6조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아니할”을 각각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해발생”을 “위해 발생”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제74조를 준용하여”를 “제74조에 따라”로, “예치하여야”를 “예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2조 중 “재공고·열람하여야”를 “재공고·열람해야”로 한다.

제35조제3호 중 “관람장”을 “관람장”으로 한다.

제42조 본문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관계법

령”을 “관계 법령”으로,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시공하여서는 아니”를 “시공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부터”를 “제1호부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각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4조제4호가목 중 “학생·교직원”을 “학생·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목 부터”를 “가목부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가목에”를 “가목에”로 한다.

제57조제7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초과 할**”을 “**초과할**”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2호다목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61조제7항 중 “**상업지역 에서**”를 “**상업지역에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장**”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중 “**심의 할**”을 “**심의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하였거**”를 “**않았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선포할수있다**”를 “**선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68조제5항 후단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과의 과장**”을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당사자 이거”를 “당사자이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취하여야”를 “청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2조 단서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임용·복무”를 “임용·복무”로 한다.

제84조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85조 중 “조례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경사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p>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 ----- ----- ----- ----- -----.</p>
<p>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① --- ----- ----- ----- 수립 해야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⑤·⑥ (생략)</p>	<p>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청취해야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p>	<p>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p>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

----- 제
출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검토해야 -----.

1. ~ 10. (현행과 같음)

③ -----
----- 않았거나 미비된 -----.

④ -----
----- 입안해야 -----.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용도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조망권경관지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 6. (생략)

② 삭제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략)

④ (생략)

제12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법 제4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용도지구의 세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보호·관리해야 -----
3. ~ 6.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관리·운영하기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 관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창원시 공동구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4조의2(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해제 가능 여부 결정 및 해제에 따른 제반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5조(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에 -----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4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는 -----

----- 관계 법령-----

-----.

제14조의2(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는 -----

-----.

제15조(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을 효율적인 운용으로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생략)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

----- 시행규칙 -----
-----.

제19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않
아도 -----
-----.

1. -----

----- 않는 -----

2. (현행과 같음)

3. -----

가. -----

----- 않는 -----

나. -----

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
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의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
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한다)

라. (생략)

4. ~ 6. (생략)

제2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
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가 5개 부서 이
하로서 서면협의를 효율적이라
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3. (생략)

② (생략)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 않는 -----

다. -----

----- 공작물을

라.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① -----

1. -----

----- 개최해야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
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
야 한다.

2. 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
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이
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
가할 수 있다.

3. (생 략)

4.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로 인하
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
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등이 발생 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위해 발
생 방지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

---에 따른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1. -----
----- 적합해야
-----.

2. ----- 21도 -----

-----.
- 21도 이상-----

-----.

3. (현행과 같음)

4. -----

----- 위해(危
害) 등이 발생할 -----.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폐붙임 등을 하여야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생략)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생략)

②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토석

----- 해야 -----
-----.

2. ----- 않도록
옹벽·석축·폐붙임 ----- 해
야 하고-----
----- 않도록 안전
하게 해야 -----.

3. -----

----- 제25조에 따른다.

4. -----

----- 않도록 -----
----- 해야 -----.

5. (현행과 같음)

6. -----

----- 해야 -----
-----.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현행과 같음)

② -----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생략)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문화재·자연생태계·경관·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6. (생략)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 5. (생략)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③ (생략)

3. -----

----- 않을 -----

4. (현행과 같음)

5. -----
위해 발생-----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고 -----

1. ~ 6. (현행과 같음)

③ -----

----- 않는다.

1. ~ 5. (현행과 같음)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32조(도시계획 입안시 재공고·열람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열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35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2. (생략)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

④ -----
않고 -----

-- 제74조에 따라 -----

----- 예치해야 -----.

----- 그
렇지 않다.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도시계획 입안시 재공고·열람사항) -----
----- 재공고·열람
해야 -----

제35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

- 1. 2. (현행과 같음)
- 3. -----

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46조(건축물 형태 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 등에 대한 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부속건축물 포함)는 경량철골조로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도시 경관상 지장이 없도록 그 형태·색상·위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은 옥탑, 물탱크, 계단탑, 건축설비 등을 조형성있게 차폐하여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 해서는 안 된다. -----

----- 그러하지 않다. -----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건축물 형태 제한 등) ① --

-----.

1. -----

----- 시공해서는 안 -----

-----.

2. -----

----- 해야 -----.

3.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의 담
장은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4. (생략)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
구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
태 및 기능상 본 규정을 적용하
기에 심히 곤란한 건축물로서
시장이 도시의 기능, 경관 및 환
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48조(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
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
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외에는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
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
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
물 그 밖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

3. -----

----- 해야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

----- 그러하지 않다.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① -----

----- 그러하지 않다.

② -----

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54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제4호에 따른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각 목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2. 27.>

1. ~ 3. (생략)

4. 학교시설보호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학생·교직원 원의 기숙사 및 그 부속용도의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부터 다목 및 마목, 바목까지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에 해당하는 것

----- . -----

----- 그러하지 않다.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 학생·교직원 -----

나. -----
----- 가목 -----

다. -----
----- 가목 -----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 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생략)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나. (생략)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생략)

제6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 ⑥ (생략)

⑦ 제6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않을 -----.

⑫ (현행과 같음)

제6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상업지역

에서 -----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⑩ (생략)

제65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관련 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 및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제67조(회의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 않는다.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호선(互選)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
조에 따라 시장-----

⑤ -----
----- 제출해야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67조(회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심의할 -----
----- 명시
해야 -----.

④ (생략)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⑦ (생략)

⑧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효를 선포할수있다.

⑨ (생략)

⑩ 간사는 안전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의2(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이한 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8조(분과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

⑤ ----- 않았거-----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 선포할 수 있
다.

⑨ (현행과 같음)

⑩ -----
----- 보고해야 ---
--.

제67조의2(심의) ① -----

----- 실시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분과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
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
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생략)

제7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
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
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 8. (생략)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
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 보고
해야 -----.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
음)

② ----- 부
서의 부서장-----
-----.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위원의 제척 등) ① -----

-----.

1. -----
----- 당사자이거-----

2. ~ 8. (현행과 같음)

② -----

----- 통보해야 -----.

③ -----

- 않아 -----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③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
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
자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
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④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
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
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
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
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
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
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 관계 기관 --

-----.

② -----

----- 응해야 -----.

③ -----

----- 청취해야 --
--.

④ -----

----- 통보해야 ---
-.

제72조(회의의 비공개) -----

만, 관계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에 속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4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6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② (생략)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 관계 법령-----

-----.

제73조(회의록) ① -----

----- 보관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

-----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

----- 제출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 임용·복무 -----
-----.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
----- 기재해
야 -----.

제85조(시행규칙) -----
----- 시행규칙-----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0.>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9. 저출산·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22조의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④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중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09. 2. 6.>]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17. 4. 18., 2021. 1. 12.>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

한 용도지구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항~제5항 생략”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 4. 14.>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 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p>필요가 없을 것</p> <p>(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p> <p>(나) 삭제 <2016. 6. 30.></p> <p>(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나. 도시·군관리계획	<p>(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다. 도시·군계획사업	<p>(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p> <p>(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p>(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p>

	<p>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p>
마. 기반시설	<p>(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p>(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p> <p>(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p>
바. 그 밖의 사항	<p>(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p> <p>(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p>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 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p>(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p> <p>(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나. 토지의 형질변경	<p>(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숫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p> <p>(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p>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

	<p>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라. 토지분할</p>	<p>(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p> <p>(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p> <p>(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p>(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p> <p>(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p> <p>(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p> <p>(라) <삭제></p> <p>(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p>

	<p>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p>(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p>
<p>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p>	<p>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p>가. 시가화 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p>나. 유보 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p>다. 보전 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 12. 7.>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하천·소하천·구거의 선형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배수시설은 배수를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까지 안전하게 분산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

	<p>만, 배수량이 토사유출 또는 붕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4) 성토비탈면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및 비탈면의 고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할 것</p> <p>5)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고려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할 것</p>
<p>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p>	<p>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윗거리 10킬로미터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p>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견폐율
- 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납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

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p>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을 것(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분묘를 처리할 것</p> <p>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p>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p>
--	---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가.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나.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2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 및 그 주변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다만,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에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

<p>아니할 것</p>		<p>용허가를 할 수 있다.</p> <p>2)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침사지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p>	<p>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p> <p>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임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임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p>

		<p>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성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p> <p>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p> <p>4) 삭제 <2015.11.11.></p>
<p>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p>	<p>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p>	<p>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해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사업계획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p> <p>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p> <p>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p> <p>4)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p> <p>5) 삭제 <2016. 12. 30.></p>

3. 산지전용대상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적용대상 사업	세부기준
<p>가.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p>	<p>공장</p>	<p>공장부지 면적(「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p>도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정하기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토양을 잘라내는 높이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

	<p>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것</p>
<p>송전시설</p>	<p>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휴양림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산지경관 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p> <p>2) 복구준공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p> <p>3)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p> <p>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p>

비고

1.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다.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부터 3)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4.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써 완화된 허가기준(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만 해당한다)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허가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제2호라목4)의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대상시설·규모 및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3호가목의 송전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마목3)·6)·10),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제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 가.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 바.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아.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자.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차.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 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2. 삭제 <2015.11.11.>
3. 삭제 <2015.11.11.>
4. 삭제 <2015.11.11.>

※ 비고

1. 산림청장등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가.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9. 12. 3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	<p>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p>
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	<p>가.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말뚝)·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p> <p>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p>

-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 4) 성토지의 자갈·토층(土層)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 5)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의 기울기는 토질에 관계없이 1: 1.4 이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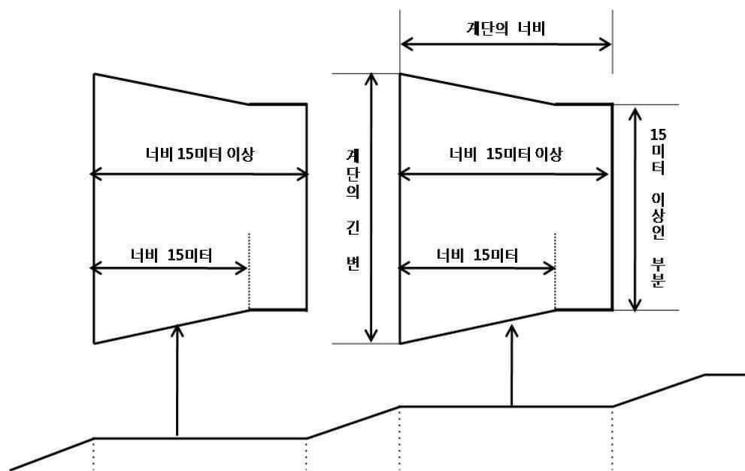
나.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 2) 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예시 참조).

[예시]



-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4)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5) 철도

6) 댐, 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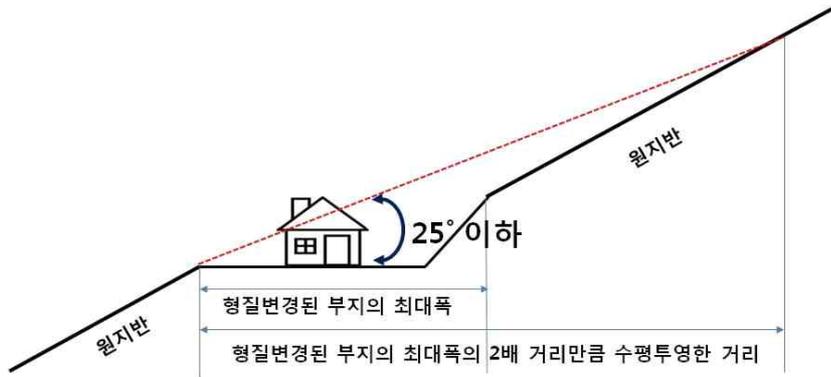
라.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 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 시]



3. 영 별표 4 제1호
마목6)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 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p>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p> <p>나.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p>
<p>4. 영 별표 4 제2호가목</p>	<p>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p> <p>다. 산불발생, 숲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숲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성장량을 반영해야 한다.</p>
<p>5. 영 별표 4 제2호나목1)</p>	<p>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라 산사태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그 주변의 사면 및 계곡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야 한다.</p> <p>나.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p>
<p>6. 영 별표 4 제2호라목1)</p>	<p>가.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p> <p>나. 관할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이고 ha당 입목축적(산불 발생, 숲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숲아</p>

	<p>배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추가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해 편입할 수 있다.</p> <p>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 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3)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관할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p>7. 영 별표 4 제2호 라목2)</p>	<p>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p> <p>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해야 한다.</p> <p>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목 식재를 통한 녹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p>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축척 1/5,000 이상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 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0 이상 1/1,000 이하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3.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 방법 등은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4. 위 표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 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4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2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다. 나목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창원신도시구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다만, 의창지구(소답동 101~159번지, 도계동 301~424번지)·서상지구(팔용동 148~198번지) 및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은 제외한다.<개정 2012.2.15>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0.1.31.>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31.>

②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법 개정 이전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5.9.25>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조사 내용에 도시생태 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3.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다)
4. 삭제 <2015.9.25.>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4.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7.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9.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10.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8., 2018.8.14.>

② 시장은 단위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재공람·열람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면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8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조(용도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

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7.>

1. 전통경관지구: 역사성과 문화성을 보전하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2. 조망권경관지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중심지 지역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신설 2018. 12. 27.>
4. 일반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신설 2018. 12. 27.>
5.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신설 2018. 12. 27.>
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신설 2018. 12. 27.>

② 삭제 <2018. 12. 27.>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12. 27.>

1.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12. 27.>

1.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숙박시설제한지구: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락시설제한지구: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특별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제4장 도시계획시설

제11조(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50퍼센트 미만
3. 건축물 높이: 50퍼센트 미만

[본조신설 2020. 11. 17.>

제11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1조에서 이동 <2020. 11. 17.>]

제12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법 제4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창원시 공동구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9.25>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20. 11. 17.>

제14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①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1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시설물의 관리와 시설부지의 관리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의 관리자를 말한다)가 행한다.<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4조의2(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처리)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가능 여부 결정 및 해제에 따른 제반사항은 제11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시설물의 관리와 시설부지의 관리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의 관리자를 말한다)가 행한다.<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해제 가능 여부 결정 및 해제에 따른 제반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

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본조 신설 2017. 2.7.]

제15조(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 불가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개정 2015.9.25>
4.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제16조(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확보)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포함)와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3. 그 밖에 공공시설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또는 설치를 위한 비용제공 등은 입안권자와 제안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16조의4를 적용[본조신설 2020. 11. 17.]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8.1.>[제목개정 2015.9.2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에서 이동 <2020. 11. 17.>]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하는 기반시설) 영 제45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도축장[본조신설 2020. 11. 17.]

제16조의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20. 11. 17.]

제17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처리)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6. 5. 9. >

1. 삭제 <2016. 5. 9.>
2. 삭제 <2016. 5. 9.>
3. 삭제 <2016. 5. 9.>
4. 삭제 <2016. 5. 9.>
5. 삭제 <2016. 5. 9.>
6. 삭제 <2016. 5. 9.>
7. 삭제 <2016. 5. 9.>
8. 삭제 <2016. 5. 9.>
9. 삭제 <2016. 5. 9.>
10. 삭제 <2016. 5. 9.>
11. 삭제 <2016. 5. 9.>

제18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인 운용으로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

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6. 5. 9.>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6. 5. 9.>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6. 5. 9.>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만 해당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16. 5. 9.>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16. 5. 9.>

제20조 삭제 <2014.5.15>

제2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가 5개 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를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담당 등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전의 협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1. 17.]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미세분 지역만 해당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5.15>

2. 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 <신설 2016. 5. 9.>

4.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등이 발생 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위해 발생 방지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6. 5. 9.]

가.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 수목과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 지역 및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은 제25조와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15.9.25>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단, 토지 보상 및 다른 법령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제외함) (개정 2020. 11. 17.>

3. 분할 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9.25>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 ⑤ 제3항제1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5.9.25>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 5. 9.]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

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촉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 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문화재·자연생태계·경관·환경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가 계속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허가면적을 포함한 허용면적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필요한 적지조경 및 원상회복을 이행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최소면적의 복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창원시 건축 조례」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

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문화재·자연생태계·경관·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8조 삭제 <2014.5.15>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2.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 12. 2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 12. 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9.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4.5.15>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4.5.15>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2.2.15>

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개정 2020. 11. 17.>
2.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20 제1호 자목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개정 2015.9.25., 2020. 11. 17.>
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4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개정 2020. 11. 17.>
4.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40,000제곱미터 이상<개정 2020. 11. 17.>
5. 기반시설 도로: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일 것<개정 2020. 11. 17.>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및 출자·출연 법인으로 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영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로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금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제32조(도시계획 입안시 재공고·열람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열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장 지역·지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개정 2014.8.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개정 2014.8.1>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개정 2014.8.1>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개정 2014.8.1>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개정 2014.8.1>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개정 2014.8.1>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개정 2013.12.30, 2014.8.1>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개정 2014.8.1>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개정 2014.8.1>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개정 2014.8.1>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개정 2014.8.1>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개정 2014.8.1>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개정 2014.8.1>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개정 2014.8.1>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개정 2014.8.1>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개정 2014.8.1>
- 19의2. 삭제 <2015.9.25>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개정 2014.8.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개정 2014.8.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②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촌 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신설 2017. 12. 26.]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신설 2017. 12. 26.>

제2절 지구에서의 건축행위

제34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미 있는 골프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8.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개정 2018. 12. 27.>

제35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타미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타미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8.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6조 삭제 <2018. 12. 27.>

제37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8.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 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9조 삭제 <2018. 12. 27.>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수변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8. 12. 27.>
3.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4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신설 2018. 12. 27.>

제41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7.>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27.>

제43조(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제44조(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27.>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조경시설물, 공개공지의 제공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8. 12. 27.]

제45조(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별표 24와 같다.<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제46조(건축물 형태 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 등에 대한 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다음 각 호

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7.>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부속건축물 포함)는 경량철골조로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시 경관상 지장이 없도록 그 형태·색상·위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7.>
 2.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은 옥탑, 물탱크, 계단탑, 건축설비 등을 조형성있게 차폐하여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3.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의 담장은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4.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은 계단을 외부로 노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피난상 필요한 계단은 제외한다.<개정 2018. 12. 27.>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및 기능상 분규정을 적용하기에 심히 곤란한 건축물로서 시장이 도시의 기능, 경관 및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27.>
-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7.>
1.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하는 경우<개정 2018. 12. 27.>
 2.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경우

제47조(자연방재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5조에 따라 자연방재지구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축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6. 12. 2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제목개정 2015.9.25]

제48조(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

호하기 위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외에는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27.>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27.>

③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제49조 삭제 <2018. 12. 27.>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500㎡이하로 주용도의 기능을 보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공연장, 전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도시계획시설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51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개정 2018. 12. 27.>

제52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 12. 27.>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개정 2020. 1. 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만 해당한다)<개정 2020.1.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3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6과 같다.

제54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제4호에 따른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각 목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2. 27.>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학교시설보호지구<신설 2018. 12. 27.>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학생·교직원 등의 기숙사 및 그 부속용도의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부터 다목 및 마목, 바목까지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에 해당하는 것

제55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56조(농업·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2에 따라 농업·수산업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57조(그 밖의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화지구<개정 2014.5.15>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27과 같다.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9.>

1. 취락지구: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개정 2014.5.15>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개정 2014.5.15>
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신설 2016. 5. 9.>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 5. 9.>

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을 일반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로 하고, 근린상업·준주거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15., 2016. 5. 9.>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개정 2016. 5. 9.>

⑥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9.>

⑦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별표27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7. 12. 26.>

⑧ 삭제 <2012.2.15>

⑨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5. 9.>

⑩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5. 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창원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창원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⑪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 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6. 5. 9., 2020.1.31.>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나.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7.2.7.>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전문개정 2016. 5. 9.]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별표 28과 같다.

제6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개정 2016. 5. 9.>

②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 5. 9.>

1. 공원(도시공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고시한 시

장정비구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제3종),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용적률은 각각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1. 17.>

④ 삭제 <2017. 12. 26.>

⑤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 12. 26.>

⑥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한 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각 호의 용적률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times (\text{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times \text{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div \text{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16. 5. 9.>

⑦ 제6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별표 2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6. 5. 9.>

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별표 28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7.>

⑩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

할 수 있다.<신설 2016. 5.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2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5. 9., 2020. 1. 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0. 1. 31.>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②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영 제84조의2, 영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신설 2016. 5. 9.>[중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6. 5. 9.]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6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2.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개정 2020. 11. 17.>

제65조(구성) ① 영 제1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환경·건설·교통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관련 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 및 외부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2.2.15, 2014.5.15)

1. 시의회 의원. 다만, 직무관련 상임위원회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5.15>

2.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공모를 통하여 다른 지역의 현업 건축사, 기술사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현업 건축사, 기술사등 민간전문가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5.15>

3.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간 중복과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상호간 위촉을 제한한다. 다만,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5.15>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5.15>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중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4.5.15] <개정 2014.5.15>

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

라도 해촉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4.5.15]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5조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심의안건 배부일부터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 개최 시까지 안전당사자와 안전과 관련하여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안전에 대하여 따로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설명할 수 있다.<신설 2014.5.15>

⑦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소속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5.15>

⑧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수있다.<신설 2014.5.15>

⑨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전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위원 명단을 요구하면 그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4.5.15>

⑩ 간사는 안전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5.15>[전문개정 2014.5.15]

제67조의2(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안건이 한 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인 경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초과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7.>[본조신설 2015.12.28]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심의,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제2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법 제12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심의(개정 2012.2.15)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4.5.15>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14.5.15>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등에 대한 자문·고문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개정 2020. 11. 17.>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신설 2014.5.15>
7. 위원이 임원 및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내에 재직하였던 기업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신설 2014.5.15>
8. 위원이 최근 2년 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신설 2014.5.15>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해촉되거나 안건 당사자 등이 제67조제6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재를 할 수 있다.<신설 2014.5.15>

1.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이 접촉금지 위반 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전문개정 2014.5.15]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에 속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 기간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로 한다.

제74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6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75조(수당 등)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장 공동위원회

제77조(기능) 공동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자문에 응한다.

제78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0)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5.15.>

1.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2 이하<개정 2020. 11. 17.>

2. 창원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개정 2020. 11. 17.>

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79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66조와 제67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80조(설치 및 기능)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81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2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2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개정 2016. 12. 28.>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8.>

제12장 보칙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0.7.1. ~ 2020.1.31. 생략

부칙 <조례 제1414호, 2020.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경우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박성원 의원)**

1. 의회사무국-1473(2022. 2. 11.)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제정 개요

조례안	부서 검토 의견	발의자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용도지역별 구분 없이 21도로 통일하는 것은 임야 등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와 구조물로 인한 경관 훼손의 문제점, 재해 등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의 우려로 인해 현행 조례의 경사도 기준 유지가 타당함. 	박성원 의원

붙임 부서검토보고서 등 각 1부. 끝.

창 원 시



주무관

이교은

의회협력담당

김정미

정책기획관

전결 2022. 3. 2.

김종필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관-1780

(2022. 3. 2.)

접수 의회사무국-2036

(2022. 3. 2.)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정책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goni07@korea.kr

/ 비공개(5)

-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원 의원발의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I 의원발의(예정) 개요

- 발 의 자 : 박성원 시의원 ● 상정시기 : 제113회 임시회(3月)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변경(안 제22조)**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1도 미만, 그 외지역은 18도 미만 ⇒ 전지역 21도 미만
 - ▶ **분과위원회·공동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구성(안 제68조, 안 제78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II 관련 법령 저촉여부 검토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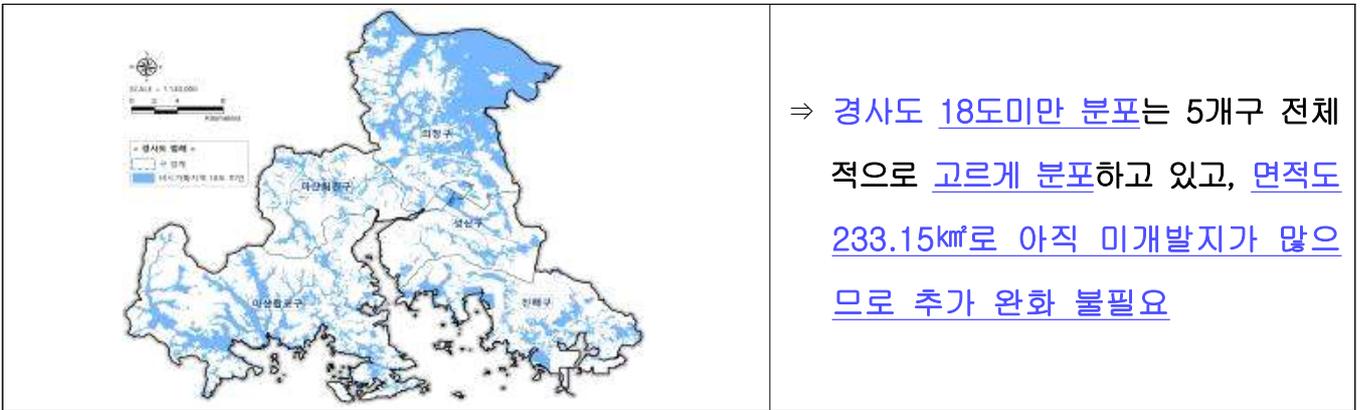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 경사도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운영세칙)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국가지자체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III 경사도 관련 검토내용

■ 개발행위허가부서 의견(5개구청 건축허가과) ⇒ **반대 의견**

의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도시지역 산지가 많아 급경사지 평균경사도 18도 적용시에도 급경사지가 많아 재해 및 경관훼손이 우려되므로 21도 완화시 많은 부작용 발생 판단
성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도 완화시 과도한 난개발 우려로 당초 경사도 유지
마산합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도모의 개발행위허가제 입법목적에 불부합 ◦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전이며, 경사도 21도 조정시 과도한 절성토 유발 ◦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공작물)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및 우기시 재해등 안전사고 위험과 인근주민 불안감 조성
마산회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경사도 21도 완화시 과도한 개발 유도로 난개발 초래 ◦ 급경사지 절성토 및 부지조성 위한 공작물 설치로 재해위험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
진해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절성토가 증가되어 위해 및 안전사고 우려

■ 비시가화지역 경사도 18도 미만 분포도 분석 ⇒ 완화 불필요



■ 타시군 경사도 비교·분석 (비교표 별첨)

- 경남도내 17개시·군 비교 : 군 지역 및 양산·밀양시 제외하면 완화기준 적용
- 광역시·특례시와 비교 : 경사도기준 가장 완화 적용

■ 검토 결과

- ⇒ **현행 조례(경사도 기준) 유지 타당**
- ⇒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경사도 18도 이상 지역에 필수 불가한 공익사업 시행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후 사업 시행함이 타당**
- 2016년 조례 개정시 자연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2도 상향 완화 적용
- 타 시·군과 비교시 우리시 경사도 기준이 높지 않음
- 경사도 완화시 임야 등 무분별한 난개발과 구조물로 인한 경관훼손, 재해발생 우려로 5개구청 개발행위허가부서 반대의견
- 도시경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시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며, 동시에 기존 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압축도시 개발 필요(창원도시기본계획 목표전략)

IV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구성 ⇒ 조항 변경 개정 예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조항은 차기 조례 개정시 개정 예정이나 제68조(분과위원회) 제78조(공동위원회)가 아닌 제65조 창원시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조항 개정 예정

※ 성별영향평가에 결과에 따라 제65조에 개정 반영 예정

V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의견 없음

- 붙임 1. 경사도 비교표 1부.
 2. 의원발의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 경상남도내 시·군

구 분	주거·상업· 공업지역	그 외 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가능여부	산정방법	비 고
창원시	21	18	○	산지관리법	경사도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진주시	12	12	△	산지관리법	심외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통영시	20	20	○	도시계획조례	
사천시	18	18	△ (18~25도 미만)	산지관리법	“산입법”에 의한 공장은 15도 미만
김해시	11	11	×	산지관리법	농업용 시설, 단독주택은 21도 미만
밀양시	25(이하)	25(이하)	×	산지관리법	녹지지역만 20도 이하
거제시	20(이하)	20(이하)	×	산지관리법	
양산시	21	21	○	자체산정 기준 정함	
의령군	25	25	○	산지관리법	
함안군	18	18	△ (단독주택)	산지관리법	
창녕군	25(이하)	25(이하)	×	산지관리법	
고성군	20	20	○	도시계획조례	
남해군	25	25	○	산지관리법	
하동군	20	20	○	도시계획조례	
산청군	25(이하)	25(이하)	×	산지관리법	
함양군	20	20	×	산지관리법	
거창군	18	18	○	산지관리법	
합천군	20	20	○	산지관리법	

■ 광역시, 특례시 비교

구 분	주거·상업· 공업지역	그 외 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가능여부	산정방법	비 고
창원시	21	18	○	산지관리법	
인천시	17	20	○	산지관리법	
부산시	17	17	×	산지관리법	
광주시	16	16	△ (10도 이상)	산지관리법	
대구시	25	17	×	산지관리법	
대전시	17	17	△ (11~17도 미만)	산지관리법	
울산시	17	17	○	산지관리법	
고양시	15	15	○	산지관리법	
수원시	25	10 (자연녹지)	○	산지관리법	
용인시	처인구 20 수지구, 기흥구 17.5		○	산지관리법	

현행	개정안	부서의견(도시계획과)
<p>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u>적합하여야</u> 한다.</p> <p>2. 경사도가 <u>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u>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u>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u>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p> <p>-----</p> <p>-----</p> <p>-----</p> <p>-----.</p> <p>1. -----</p> <p>----- <u>적합해야</u> -----</p> <p>-----.</p> <p>2. ----- <u>21도</u> -----</p> <p>-----</p> <p>-----.</p> <p>----- <u>21도 이상</u>-----</p> <p>-----</p> <p>-----</p> <p>-----</p> <p>-----.</p>	<p>2. 경사도가 <u>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u>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u>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u>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 검토보고와 같이 현행 조례</p>

유지함이 타당

3. (생략)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생략)

3. (현행과 같음)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6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호선(互選)한다.

③(현행과 같음)

③ -----
-----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현재 개정 진행중

④(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④(현행과 같음)

⑤ -----
----- 제출해야 -----.

⑥·⑦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
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관
련 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 및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
상이 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조례 개정시
개정 예정

<p>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u>보</u> <u>고하여야</u> 한다.</p> <p>제78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되 <u>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u>야 한다.</p> <p>1. ~ 3. (생략)</p>	<p>----- <u>보</u> <u>고해야</u> -----.</p> <p>제7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되 <u>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u>야 한다.</p> <p>※ 도시계획조례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현행 유지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포함 구성되는 위원회로 건축위원회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내용 충족시 가능</p>
---	--	--

※ 상기사항 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사항은 의견없음

[별지 제1호서식]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개정(안)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발생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4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안)에 따른 지출이나 수입이 되는 원인이 없어 계상 불가
4. 작성자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박성원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의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2. 2. 25.(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의사항 :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 례 안	발 의 자	상 정 시 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원 의원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 임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주무관 **박주영** 입법예산담당 **유정호**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전결 2022. 2. 11.

협조자 전문위원 **박선희**

시행 의회사무국-1473 (2022. 2. 11.)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의회사무국 (용호동) / <http://council.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3 팩스번호 055-225-4743 / dejavu4934@korea.kr / 비공개(5)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 .

발 의 자 : 박성원 의원

1. 제안이유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1도, 그 외 지역은 18도로 용도지역별 세분 규정한 것을 21도로 통일하여 개발가능부지를 확보하고 개인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여 도시발전의 탄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경사도 요건을 변경함(안 제2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6조~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4조~15조, 안 제18조~제20조의2, 안 제22조~제29조, 안 제31조 및 제32조, 안 제42조~제44조, 안 제46조, 안 제48조, 안 제54조, 안 제57조, 안 제59조, 안 제61조, 안 제65조, 안 제67조~제74조, 안 제78조, 안 제83조~ 제8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청취하여야”를 “청취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였거나 미비 된”을 “않았거나 미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안하여야”를 “입안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호·관리하여야”를 “보호·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관리·운영 하기”를 “관리·운영하기”로 한다.

제12조 중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에”를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에”로, “「창원시 공동구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조례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아니

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작물의”를 “공작물을”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개최하여야”를 “개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를 “21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이상”을 “21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위해 등이 발생 할”을 “위해(危害) 등이 발생할”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도록 용벽·석축·폐붙임”을 “않도록 용벽·석축·폐붙임”으로, “하여야하고”를 “해야 하고”로,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를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5조를 준용한

다”를 “제25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같은 호 및 제6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6조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아니할”을 각각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해발생”을 “위해 발생”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제74조를 준용하여”를 “제74조에 따라”로, “예치하여야”를 “예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2조 중 “재공고·열람하여야”를 “재공고·열람해야”로 한다.

제35조제3호 중 “관람장”을 “관람장”으로 한다.

제42조 본문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관계법

령”을 “관계 법령”으로,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시공하여서는 아니”를 “시공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부터”를 “제1호부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각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4조제4호가목 중 “학생·교직원”을 “학생·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목 부터”를 “가목부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가목에”를 “가목에”로 한다.

제57조제7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초과 할**”을 “**초과할**”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2호다목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61조제7항 중 “**상업지역 에서**”를 “**상업지역에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중 “**심의 할**”을 “**심의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하였거**”를 “**않았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선포할수있다**”를 “**선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68조제2항 후단 중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과의 과장**”을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당사자 이거”를 “당사자이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취하여야”를 “청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제1항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임용·복무”를 “임용·복무”로 한다.

제84조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85조 중 “조례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경사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p>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p>
<p>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① ---- 수립해야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⑤·⑥ (생략)</p>	<p>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청취해야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p>	<p>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p>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

----- 제
출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검토해야 -----.

1. ~ 10. (현행과 같음)

③ -----
----- 않았거나 미비된 -----.

④ -----
----- 입안해야 -----.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용도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조망권경관지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 6. (생략)

② 삭제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략)

④ (생략)

제12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법 제4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용도지구의 세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보호·관리해야 -----
3. ~ 6.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관리·운영하기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 관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창원시 공동구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4조의2(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해제 가능 여부 결정 및 해제에 따른 제반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5조(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에 -----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4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는 -----

----- 관계 법령-----

-----.

제14조의2(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는 -----

-----.

제15조(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을 효율적인 운용으로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생략)
3.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

----- 시행규칙 -----
-----.

제19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않
아도 -----
-----.

1. -----

----- 않는 -----
2. (현행과 같음)
3. -----
 - 가. -----

----- 않는 -----
 - 나. -----

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
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의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
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한다)

라. (생략)

4. ~ 6. (생략)

제2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
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가 5개 부서 이
하로서 서면협의를 효율적이라
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3. (생략)

② (생략)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 않는 -----

다. -----

----- 공작물을

라.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① -----

1. -----

----- 개최해야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
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
야 한다.

2. 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
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이
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
가할 수 있다.

3. (생 략)

4.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로 인하
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
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등이 발생 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위해 발
생 방지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

---에 따른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1. -----
----- 적합해야
-----.

2. ----- 21도 -----

-----.
- 21도 이상-----

-----.

3. (현행과 같음)

4. -----

----- 위해(危
害) 등이 발생할 -----.

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제25조와 제27조에 따
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⑤ (생 략)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
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
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
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
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

----- 그러하지 않다.

② -----

----- 않는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않는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 -----

----- 않은

----- 않는 -----

-----.

1. -----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폐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생략)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생략)

②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토석

----- 해야 -----
-----.

2. ----- 않도록
옹벽·석축·폐붙임 ----- 해야
하고-----
----- 않도록 안전
하게 해야 -----.

3. -----

----- 제25조에 따른다.

4. -----

----- 않도록 -----
----- 해야 -----.

5. (현행과 같음)

6. -----

----- 해야 -----
-----.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현행과 같음)

② -----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생략)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문화재·자연생태계·경관·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6. (생략)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 5. (생략)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② (생략)

3. -----

----- 않을 -----

4. (현행과 같음)

5. -----
위해 발생-----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고 -----

1. ~ 6. (현행과 같음)

③ -----

----- 않는다.

1. ~ 5. (현행과 같음)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 증금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 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32조(도시계획 입안시 재공고·열람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열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외의 사항을 말한다.

③ -----
-----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④ ----- 않고 -----

제74조에 따라 -----
----- 예치해야 -----

----- 그렇지 않다.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도시계획 입안시 재공고·열람사항) -----

----- 재공고·열람해야 -----

-----.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
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
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
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
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
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
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46조(건축물 형태 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중심
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담장·대문 등에 대한 구조·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
경관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건축
물의 구조(부속건축물 포함)는
경량철골조로 시공하여서는 아
니 되며, 도시 경관상 지장이 없

----- 해야 -----.

② -----

----- 해서는 안 된다. -----

----- 그렇지 않다. -----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건축물 형태 제한 등) ① --

-----.

1. -----

----- 시공하여서는 안 -----

도록 그 형태·색상·위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은 옥탑, 물탱크, 계단탑, 건축설비 등을 조형성있게 차폐하여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의 담장은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4. (생략)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및 기능상 본 규정을 적용하기에 심히 곤란한 건축물로서 시장이 도시의 기능, 경관 및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48조(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외에는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

-----.

2. -----

----- 해야 -----.

3. -----

----- 해야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

----- 그렇지 않다.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

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54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제4호에 따른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각 목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2. 27.>

1. ~ 3. (생략)

4. 학교시설보호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학생·교직원의 기숙사 및 그 부속용도의 것

----- 그러하지 않다.

② -----

----- 그러하지 않다.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 학생·교직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부터 다목 및 마목, 바목까지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에 해당하는 것

제57조(그 밖의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6. (생략)
7. 경관지구(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 5. (생략)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나. -----
----- 가
목부터 -----

다. -----
----- 가
목에 -----

제57조(그 밖의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1. ~ 6. (현행과 같음)
7. -----
않은 -----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 「산업입지 및

용적률) ① ~ ⑥ (생략)

⑦ 제6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⑩ (생략)

제65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67조(회의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용적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상업지역
에서 -----

----- 않는다.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호선(互選)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출해야 -----.

⑥·⑦ (현행과 같음)

제67조(회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심
의할 -----.
----- 명시
해야 -----.

④ (현행과 같음)

⑤ ----- 않았거-----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⑦ (생략)

⑧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효를 선포할 수 있다.

⑨ (생략)

⑩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의2(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안건이 한 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 선포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

⑩ -----
----- 보고해야 -----
--.

제67조의2(심의) ① -----

----- 실시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양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4.5.15.>

③·④ (생략)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생략)

제7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 8. (생략)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보고
해야 -----.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서의 부서장-----
-----.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위원의 제척 등) ① -----

-----.

1. -----
----- 당사자이거-----

2. ~ 8. (현행과 같음)

② -----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

----- 통보해야 -----.

③ -----

----- 않아 -----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 관계 기관 -----
-----.

② -----

----- 응해야 -----.

③ -----

----- 청취해야 -----
-----.

④ -----

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에 속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4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6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통보해야 -----
-.

제7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회의록) ① -----

----- 보관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

-----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

----- 제출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구성) ①·② (생략)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8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② (생략)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8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 임용·복무

-----.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기재해야 -----.

제85조(시행규칙) -----
----- 시행규칙-----
-----.